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1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시설제도는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관련 증빙 필수 제출(제출서류 참고)

** 적용제품 확인과 적용시설 확인 동시 신청 불가

- 단, 접수마감일 현재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제출 必
- (적용제품)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사업화 기반이 보유되어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제품(모델별)에 대한 규격서 제시 必
- 신청 건당 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
- 현장심사 전 사전검토로 제품(모델)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실시 예정

- (적용시설) 해양수산신기술(공사기술)을 적용하여 공사 또는 설치가 완료된 시설로서, 확인받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증빙 제출 必
- 신청 건당 확인 대상 시설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5개 이내로 한정
- * 확인대상 시설이 5개를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시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접수 전 담당자 사전연락
- ** 해양수산신기술을 받은 자가 건설 또는 공사 등에 참여하여 인증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완료 또는 설치하였을 경우 신청가능(단, 신기술을 받은자가 아닌 대상(기술협약자, 기술사용자, 설계자 등)과 단순 제품 납품 등은 신청 불가)
- 현장심사 전 서류검토로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적 검토 실시 예정

2. 심사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	A. 신기술 적용 내용 1. 신기술 적용여부: 인증신기술의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시설 내 적용 정도 2. 인증신기술이 제품 또는 시설의 기능에 핵심적 기여 여부
	B.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성능 및 품질 1. 성능: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시험·인증의 증빙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2. 품질경영: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품질경영체계(품질계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품질개선 등) 구축 수준 3. 신뢰성 및 안전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 생산 가능여부 및 안전성 확보 여부 4.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5. 시공성 및 안전성: 인증신기술의 시공 편의성, 절차 간소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5호)」 별표6

3. 심사 · 평가절차

가.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바다봄 지식정보 시스템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사전검토) 현장심사 전 대상 제품(모델)의 규격서, 성적서 등 서류 사전검토를 통해 현장심사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현장심사) 신기술 적용 내용, 성능 및 품질 등 심사

*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 현장에서 현장심사 진행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일정(안)】

시행계획 공고(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사전검토	현장심사	확인서 발급
KIMST	▶ 해수부 홈페이지공고	▶ 전문가 (KIMST)	▶ 전문분과위 (KIMST)	▶ 해수부
8/7~9/7 (8/18~9/7)	9~10월	10월	10~11월	12월

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시설 확인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바다봄 지식정보 시스템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서류검토) 대상 시설의 제출서류 대해 적용시설에 적용된 공사의 계약서, 공사완료 증빙 등 신기술 활용 여부 검증으로 현장심사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현장심사) 신기술 적용 내용, 성능 및 품질 등 심사

*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어 공사가 완료된 시설 현장에서 현장심사 진행

【신기술 적용시설 확인 심사일정(안)】

시행계획 공고(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서류검토	현장심사	확인서 발급
KIMST	▶ 해수부 홈페이지공고	▶ 전문가 (KIMST)	▶ 전문분과위 (KIMST)	▶ 해수부
8/7~9/7 (8/18~9/2)	9~10월	10월	10~11월	12월

4.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8. 7.(금) ~ 9. 7.(월)
- (접수기간) 2026. 8. 7.(금) ~ 9. 7.(월) 15:00까지
- * 2026. 9. 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 확정
- (접수방법)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s://badabom.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인증/평가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적용제품·시설→신청)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제출서류 등록란이 없거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압축파일로 “기타”항목에 제출요망

○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필수제출)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전산접수	별첨양식
②	(필수제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 인증신기술이 적용제품·시설에 활용된 부분 작성하되 2-1 또는 2-2 개발기술 적용제품/시설 부분 상세작성	전산접수	별첨양식
③	(필수제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요약본	전산접수	별첨양식
④	(필수 제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확인 심사 받고자 하는 제품(모델의 경우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또는 시설에 대한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내 모델명이 없는 경우 해당 모델 심사 제외	전산접수	-
⑤	(필수 제출)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 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전산접수	-
⑥-1 제품	적용제품(모델) (직접 생산인 경우) 1. 공장등록증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가능한 경우) 3. 건축물 관리대장 (공장면적 500m ² 미만 인 경우) 4.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등(별첨 양식)	전산접수 (압축하여 하나로 첨부)	규격서 (별첨양식 활용)
	적용제품(모델) (OEM 생산인 경우) 1. OEM 계약서 2. 제조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등(별첨 양식)		
⑥-2 시설	적용시설 1. 적용시설의 공정도(전체 공정도를 계통도로 나타내고 신 기술이 적용된 공정을 굵은 점선 표시) 2. 적용시설의 공종(공종의 전체 내역서 중 신기술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 표시) 3. 발주처(청)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신기술 실적 증명서(별첨양식) - 증명서 내 인감 필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4. 확인 대상 시설의 주요 규격, 제원, 수량, 재질 등 확인가능 서류 5. 적용시설에 대한 신기술의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등) - 단,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별도 표기 6. 공사이행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준공검사조서, 하자보수보증서, 감리보고서 등) 7. 그 밖에 신기술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산접수 (압축하여 하나로 첨부)	신기술 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활용)
⑦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전산접수	-
⑧	공동신기술인 경우 공동 인증기관의 제품·시설 확인 신청에 대한 동의서(해당시)	전산접수	-

※ 추후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혜택

가. (적용제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호 마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호 라목 참조)

나. (적용시설)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제도 신청 가능

- 신기술 적용시설로 확인된 시설은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신청 가능
 - * (신기술 활용실적)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기술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됨
 -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제도 시행 예정

6. 심사 수수료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051-773-6222 sangone93@korea.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담당자가 다수의 전화응대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으로 문의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누리집(www.mof.go.kr/www.kimst.re.kr) 사업공고(공지사항) 등을 참고